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議案 番號	178
----------	-----

提出年月日 : 1992. 10. 28

提出者 : 金容濬 議員 外 4人

1. 提案理由

- 本條例 第2條 2項에 의하면 行政事務監査는 每年 定期會 期間中 5日 以內로 實施하되 常任委員會 또는 監査特別委員會가

(以下 監査委員會라한다) 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本會議의 承認을 얻어 確定된 監査計劃書에 의하여 행한다로 되어 있으며

- 同條例 第9條 (監査 또는 調査의 方法) 第1項에 의하면, 報告또는 書類提出, 出席證言, 意見陳述 등을 要求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음.

- 따라서 行政事務 監査計劃書를 定期會 以前에 作成 本會議 承認을 얻어 執行部로 移送하는 自體도 監査行爲로 보아 上記

關係條項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면 地方議會의 定期會 日程이나 業務量으로 보아 效率的인 會期運營이 어려우며

- 특히 執行部の 各種 資料準備나 受監準備에는 짧은 日程에 많은 애로로 오히려 本연의 市政業務推進에 차질을 줄 憂慮가 있으므로 充分的 受監準備나 充實한 資料提出이 되도록 하기 위함.

2. 主要骨子

- 大田直轄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1) 第2條 第2項의 現行 文脈을 一部調整

(現行) 第1項의 監査는 每年 定期會期間中 5日以內로 實施 하되 常任委員會 또는 監査特別委員會(以下“監査委員會”라 한다)가 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本會義承認을 얻어 確定된 監査計劃書에 의하여 行한다를

(改正) 第1項의 監査는 常任委員會 또는 監査特別委員會(以下“監査委員會”라 한다)가 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本會議承認을 얻어 確定된 監査計劃書에 의하되 每年 定期會期間中 5日以內를 實施한다.

- 3項 新設 - 事前 節次를 취하여 充分的 準備期間부여

2) 第15條 4項, 5項, 新設

4項 { 行政監査 - 結果報告의 미진한 分野에 대해 措置
要求와
調 査 - 不振하거나 견해가 상반된 分野
再調査可能條項

5項 - 再 措置要求나 再調査의 경우 期間을 制限하는 內容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大田直轄市議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 관한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第2項내지 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第1項의 監査는 常任委員會 또는 監査特別委員會 (以下 “監査委員會”라 한다)가 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本會議의 承認을 얻어 確定된 監査計劃書에 의하여 行하되 監査는 每年 定期會 期間中 5日以內로 實施한다.

③ 第2項의 監査計劃書는 定期會 前에 計劃을 樹立, 本會議 承認을 얻어 事전에 必要한 節次를 受監部署로 하여금 準備하도록 할수 있다.

同條 第3項내지 第5項을 第4項내지 第6項으로 한다.

第15條 第4項 및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議會에 報告된 處理結果中 監査의 경우 豫算, 規定 等の 制約 等 妥當한 事由로서 소명함이 없이 處理 또는 是正되지 않는 事項에 대하여는 本會議 承認을 얻어 再處理 및 是正要求를 할수 있으며, 調査의 경우 當初 調査計劃의 目的과 範圍內에서 豫算, 規定 等 妥當한 事由로서 是正되지 않거나, 議會와 該當 機關間에 상당한 見解의 差異가 있는 事項에 대하여는 本會議 承認을 얻어 再調査를 할 수 있다.

⑤ 第4項에 의한 再調査의 경우 結果報告書가 議會에 到着한 날부터 30日 以內에 本會議 承認을 얻어야 한다.

附 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新・舊 條 文 對 照

現 行	改 正 案
<p>第1條(目的) 이 條例는 地方自治法(이하 "法"이라 한다)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第19條의 2의 規定에 의하여 大田直轄市議會(이하 "議會"라 한다)가 행하는 行政事務監査(이하 "監査"라 한다)와 行政事務調查(이하 "調査"라 한다)에 관한 節次 其他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1條(目的) <現行과 같음></p>
<p>第2條(監査) ①議會는 市の 行政事務에 關하여 所管 常任委員會別로 監査를 行한다 다만, 本會議의 議決로 監査特別委員會를 構成하여 監査를 行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監査는 每年 定期會 期間中 5日以內로 實施하되, 常任委員會 또는 監査特別委員會(이하 "監査委員會"라 한다)가 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本會議의 承認을 얻어 確定된 監査計劃書에 의하여 行한다.</p>	<p>第2條(監査) <現行과 같음></p> <p>②常任委員會 또는 監査特別委員會(以下 "監査委員會"라 한다)가 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本會議의 承認을 얻어 確定된 監査計劃書에 의하여 行하되 監査는 每年 定期會期間中 5日以內로 實施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③第2項의 監査計劃書는 定期會 前에 計劃을 樹立 本會議 承認을 얻어 事前에 必要한 節次를 受監部署로 하여금 準備하도록 할 수 있다.</p>

現 行

改 正 案

③監査計劃書에는 監査日程, 監査委員會의 編成, 監査要領, 監査場所 等 監査에 必要한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④

④本會議는 第3項의 監査計劃書を 檢討한 다음 議決로가 이를 承認하거나 返戻한다.

⑤

⑤議會議長(이하"議長"이라 한다)은 監査計劃書가 本會議에서 承認된 때는 지체없이 市長에게 이를 通知하여야 한다.

⑥

第15條(監査 또는 調査報告에 대한 處理)

<現行과 같음>

①議會는 本會議의 議決로 監査 또는 調査報告를 處理한다.

② <現行과 같음>

②監査 또는 調査結果 市 또는 該當機關의 是正을 必要로 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議會는 그 是正을 要求하고 市 또는 該當機關에서 直接 處理함이 妥當하다고 認定되는 事項은 市 또는 該當機關에 移送한다.

③ <現行과 같음>

③市 또는 該當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要求를 받거나 移送받은 事項을 지체없이 處理하고 그 結果를 議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現	行	改 正 案
	<新設>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議會에 報告된 處理 結果中 監査의 경우 豫算, 規定등의 制約등 妥當한 事由로서 소명함이 없이 處理 또는 是正되지 않은 事項에 대하여는 本會議 承認을 얻어 再處理 및 是正 要求를 할 수 있으며, 調査의 경우 當初 調査計劃의 目的과 範圍內에서 豫算, 規定 등 妥當한 事由로서 是正되지 않거나 議會와 該當 機關間에 상당한 見解의 差異가 있는 事項에 대하여는 本會議 承認을 얻어 再調査를 할 수 있다.
	<新設>	⑤第4項에 의한 再調査의 경우 結果報告 書가 議會에 도착한 날부터 30日 以內에 本會議 承認을 얻어야 한다.

大田直轄市 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審 査 報 告 書

1992 . 11 .

議 會 運 營 委 員 會

目 次

I. 審 查 經 過	2
II. 提案說明의 要旨	2
III.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4
IV. 質疑 및 答辯 要旨	6
V. 討 論 要 旨	6
VI. 審 查 結 果	6
VII. 少數 意見의 要旨	6
VIII. 其他 必要한 事項	6

大田直轄市 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關한 條例中 改正條例案
審 査 報 告 書

1992年 11月 5日
議會 運營 委員會

I. 審 査 經 過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 1992年 10月 28日 金 容 濬 議員外
4人 議員

나. 回 附 日 字 : 1992年 10月 29日

다. 上 程 日 字 : 第16回 大田直轄市 議會(臨時會)
第1次運營委員會('92. 11. 5)
上程, 審議, 議決

II. 提案 說明 要旨 (提案說明者 : 金容濬 議員)

1. 提 案 理 由

本 條例 第2條 2項에 의하면 行政事務監査는 每年 定期會 期間中
5日 以內로 實施하되 常任委員會 또는 監査特別委員會가(以下 監
査委員會라한다) 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本會議의 承認을 얻어 確
定된 監査計劃書에 의하여 행한다로 되어 있으며

同 條例 第9條 (監査 또는 調査의 方法) 第 1項에 의하면 報告 또는
書類提出, 出席證言, 意見陳述 等を 要求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음.

따라서 行政事務 監査計劃書を 定期會 以前에 作成 本會議 承認을 얻어 執行部로 移送하는 自體도 監査行爲로 보아 上記 關係條項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다면 地方議會의 定期會 日程이나 業務量으로 보아 效率的인 會期運營이 어려우며, 특히 執行部の 各種 資料準備나 受監準備에는 짧은 日程에 많은 애로로 오히려 本연의 市政業務推進에 차질을 줄 憂慮가 있으므로 充分한 受監準備나 充實한 資料提出이 되도록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가. 第2條 第2項의 現行 文脈을 一部 調整

- (現行) 第1項의 監査는 每年 定期會期間中 5日以內로 實施하되 常任委員會 또는 監査特別委員會(以下 “監査委員會”라 한다)가 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本會議 承認을 얻어 確定된 監査計劃書에 의하여 行한다를
- (改正) 第1項의 監査는 常任委員會 또는 監査特別委員會(以下 “監査委員會”라 한다)가 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本會議 承認을 얻어 確定된 監査計劃書에 의하여 每年 定期會 期間中 5日以內로 實施한다

나. 3項 新設 - 事前 節次를 취하여 充分한 準備 期間 부여

다. 第15條 4項, 5項 新設

- 4項

{	行政監査 - 結果報告의 미진한 分野에 대해 措置 要求와
}	調 査 - 不振하거나 견해가 상반된 分野 再調 査 可能 條項

- 5項 - 再 措置要求나 再調査의 경우 期間을 制限하는 內容
임.

IV. 專門委員 檢討報告要旨

(專門委員 : 金鎮燮)

本 案件은 現行 監査制度上 不合理한 運營體制를 效率的으로 補完
改正하고자 하는 것임.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第 2條 2項의 文脈을 一部 調整하고 同 條 3項을 新設하는
內容입니다. 이는 定期會 前에 監査計劃을 樹立 本會議承認을 언

어 事전에 必要한 節次를 受監部署로 하여금 準備하도록 하는 內
容으로써,

定期會議時 本會議에서 監査計劃書를 承認하여 監査를 實施한다면
地方議會의 定期會 日程이나 業務量으로 보아 效率的인 會期

運營이 어려우며, 특히 執行部의 各種 資料 準備나 受監準備에는
짧은 日程에 많은 애로로 오히려 본연의 市政 業務 推進에 차질

을 줄 憂慮가 있으므로 充分한 受監準備와 充實하고 內實있는 資
料提出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新設한 內容입니다.

들째로 第 15條 4項의 新設입니다.

現行 條例 第 15條 2項, 3項에 監査 또는 調査結果 市 또는 該當機關의 是正을 要求하였을 때 該當機關에서는 是正 要求를 받거나

나 移送받은 事項에 對하여 지체없이 處理하고 그 結果를 議會에 報告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過程을 통해 議會에 報告된 處理 結果 報告中 監査의 경우 豫算이나 規定의 제약 등 妥當하고 客觀性있는 事由로서 소명

함이 없이 不充分한 處理 또는 是正되지 않은 事項에 대하여는, 本會議 承認을 얻어 再處理 및 是正 要求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調査의 경우도 當初 調査計劃의 目的과 範圍內에서 豫算이나 規定 등 妥當한 事由로서 是正되지 않거나 議會와 該當機關間에

相當한 見解의 차이가 있는 事項에 대하여는 本會議 承認을 얻어 再 調査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第15條 5項의 新設로 同條 4項에 의한 再調査의 경우 結果 報告書가 議會에 到着한 날로부터 30日以內에 本會議 承認을 얻어야 한다는 內容과 되겠습니다.

以上の 檢討報告 內容과 같이 監査準備過程에서의 짧은 日程에 많은 受監準備를 해야 하는 執行部の 立場과 監査나 調査結果報告時 미진한 部分이나 相反된 見解가 있을때 議會次元의 後續 措置 制度가 없는 등 非效率적이고 不合理한 部分을 補完 改正하려는 內容인바, 必要한 措置라 思料됩니다.

IV. 質疑 및 答辯 要旨 : 省 略

V. 討 論 要 旨 : 省 略

VI. 審 查 結 果 : 原 案 可 決

VII. 少 數 意 見 의 要 旨 : 없 음

VIII. 其 他 必 要 한 事 項 : 없 음